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봄호 | 2014년 4월 21일

발행인 유병우
 편집인 이성운·한석홍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9-11번지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택시감차보상 자원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이이재, 새정치민주연합 설훈의원 입법 대표발의 유병우 회장, 국회 통과로 택시업계 경영난 도움되길 희망

전국적으로 약 25.5만대 택시가 운행 중이나, 이 중 5만여대(20%)가 과잉공급되어 수입구조 악화 등 택시문제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이재(강원 동해 삼척) 의원 등 14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2.18.발의하여 제323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이재의원은 조특법 발의 배경에 대하여 택시의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택시업계는 이와 같은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부담금으로 보상자원을 조성하여 택시 감차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택시



▲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강원도 동해삼척)

업계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자원 관리기관에 지급하



▲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을)

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설훈(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의원도 택시 감차보상 법안(조특법)을 ‘14.4.3.발의하였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

격한 감소로 인한 어려움에 더하여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감소와 경영악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택시 업계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25만5천여대 중 5만여대의 과잉공급된 택시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부담금으로 보상자원을 마련해 택시 감차(減車)를 추진하려고 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업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면제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분의 50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자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16만 4천여명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은 크게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두 개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가 회생의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



최고한도 4,000만원



연 5.9%

금리 최저 연 5.9%



0%

수수료 0원



상품안내

- 전화 한 통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
- 차량담보가치를 활용한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 한도 : 최소 300만원 ~ 최고 4,000만원
- 금리 : 최저 연 5.9%부터(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 기간 : 12/24/36개월 중 선택 가능
- 근저당 비용 : 없음
- 취급·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연체 이자율 : 19 ~ 29%(대출금리별 차등 적용)

혜택

- 개인택시 기사님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 (한시적 적용으로 금리 변경 가능)
- 방문 없이 전화로 대출 가능(심사기준 완화)

대상고객 및 차종

- 운행 이력 1년 이상의 개인택시 사업자
- 출고 이후 7년 이내의 본인 소유 택시
- 기타 본인 소유 차량 담보 가능(승용, RV, 승합, 상용 등)

이용방법

- 현대캐피탈 고객센터 1588-5330 (상담 시 전국 개인택시 공제 조합원 여부를 상담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 대상고객, 차종,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확인 요망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40414-163442호(2014.4.14)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 인사말

정부는 더 이상 16만 4천 개인택시 사업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라!!



존경하는 16만 4천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유례없는 한파와 폭설에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의 향연이 온 산하를 뒤덮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싱그러운 이 계절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완화 및 철폐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정부 부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가능한 완화 또는 철폐하여 경제활성화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대중교통의육성 및 진흥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후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우리 업계의 꿈이 산산히 부숩졌습니다. 수 많은 논란과 진통 끝에 정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택시발전법”의 입법취지는 택시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택시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택시법”하위법령의 규제강화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방침인 규제완화에도 상반되고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처벌조항 보다 더 강화되어 과연 택시를 살리기 위한 발전법인지 택시 죽이기 법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택시종사자의 사기를 저하하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업계의 건의 사항을 대폭 수용하기를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지난 4월 2일 “택시법” 하위법령의 입법예고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 연합회와 16개 시·도조합은 국토부를 상대로 막바지 힘겨운 조율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논란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가보조금으로 감차를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유가보조금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절대 손탈 수 없습니다. LPG부가세 면제를 반드시 쟁취해 감차출연금으로 사용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공식입장이며, 현재 이이재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처벌강화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의 처벌규정 으로도 충분히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으며, 택시발전법에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은 택시법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처벌을 대폭 완화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선거지만 우리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 선거입니다. 업계의 당면과제인 감차보상·행정처벌수위·공평한 총량산정 등 해결해야할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지연·학연 등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업계를 대변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전략적 투표를 하여 16만 4천여명 개인택시 사업자와 그 가족들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각고의 자정 노력과 교통질서 확립, 대승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연합회와 시·도조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권익을 지켜내겠으니 안심하시고 생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여러분과 가정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차로만 고집하는 당신,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혹시, 나 혼자 편하겠다고 고속도로 1차로만 고집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1차로, 반드시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지정차로입니다.

KOROAD
도로교통공단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2014. 개인택시공제조합 신규직원 연수과정



▲ 2014년 신규직원 연수과정

꽃샘추위가 한창이었던 지난 3월초, 봄을 시샘하는 늦추위도 금방이라도 녹아버릴 듯한 열정과 패기로 뭉친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신규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꿈꾸는 젊음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주제로 ‘2014. 신규직원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과정은 2013년도 임용된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12개의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자배법 및 약관해설, 대인·대물보상 실무, 구상실무, 의료실무 등 공제조합

의 보상업무에 기초가 되는 이론강의와 더불어 공제조합의 일원으로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부규정, 공제조합 조직 및 체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총무실무 강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민원방지 및 고객만족 등을 주제로 한 교육과정도 마련되어 신규직원들의 기초역량 강화와 더불어 대외 공신력 제고와 대고객 친절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연수과정의 강사는 공제조합의 실무 책임자들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공제조합 본·지부 소속 간부급 직원들이 맡았다.

특히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생겨날 수 있는 갖가지 상황들과 사례들에 대하여 발생이유와 대처법에 관하여 상세한 강의가 진행되어 참가한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강사이기 전에 한 직장에 몸담고 있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강사들의 모습과 강사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세라 강의의 시작부터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진지한 태도로 임했던 교육생들의 열정이 연수의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줄곧 이어졌다.

이번 연수에서는 특히 정기 일과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야간교육, 분임토의 등 일부 과정이 진행됐다. 하루종일 이어지는 교육에 교육생들이 피곤할 법도 했지만,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야간일정이 끝난 뒤에도 강의실에 남아 자율학습과 토론을 하며 그날 배운것들을 복습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연수의 마지막날, 6박 7일의 연수과정을 모두 마친 직원들의 표정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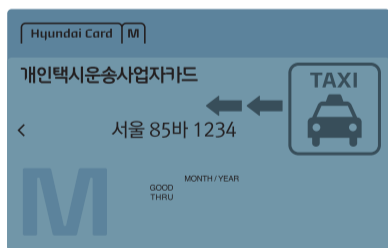
7일간을 동고동락했던 정들었던 동

기들과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연락처를 주고받는 직원들도 있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연수과정에서 배웠던 이론과 지식들을 바탕으로 공제조합의 업무 일선에서 활약할 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공제조합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

공제조합의 일원으로 첫발을 내딛은 직원들을 위하여 동 연수과정은 업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되며, 기획에서 진행까지 모든 과정의 시작과 끝을 공제조합이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4년도 신규직원연수과정으로 공제조합의 직원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규직원들의 열정과 젊음의 에너지가 2014년도 내내 공제조합과 함께 하길 희망하며 올 한해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본다.

현대카드M-개인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자동차생활카드



연회비
유류·국내전용 면제
일반·국내전용 5,000원(초년도 정상청구, 차년도 이후 면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서비스

LPG 충전 시 리터당 239원 혜택(면세 및 보조금 혜택)
· 한국석유공사 공시가 기준으로, 국세청 및 국토해양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일 4회 한도/부제일 이용권, 충전회차 간 1시간 이하건 서비스 제공 불가, 1회 충전한도량 72리터에 한해 지급 (한도 초과 시 해당건에 대해 지급 거절)

SK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1,000원당 10 M포인트 적립

전국 400개 하이카프라자 지정점에서 자동차 부품 및 용품 최고 50% 할인

종합건강검진 예약 시 40~60% 할인

현대카드M 서비스

모든 가맹점에서 1,000원당 5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 및 신차 구매 시 별도 적립률 적용되며(세이브-오토 이용 시 1,000원당 20 M포인트), 현금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등은 적립 제외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시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 적립된 M포인트 및 세이브-오토로 최고 200만원 절약
· 세이브-오토 : 신차 구매 시 세이브-오토 30만원 이용하고, 적립된 M포인트로 3년간 상환하는 서비스

· 카드 이용금액 연체 시 23.5~29.5%의 연체이자율 적용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품설명 및 약관 참고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심의회 제131209-132611호(2013.12.09)



가입문의 | 카드신청전용 | 현대카드 홈페이지
전국 시·도 조합 실무 담당자 | 1577-0100 | www.hyundaicard.com

전남조합

제 12대 이사장에 여근하 당선자 취임, 투명조합 경영 등 6대 추진 밝혀



유병우 회장, 주승룡 국토교통위원 등 참석

김남완 이사장의 중도 사임으로 공석인 제 12대 전남조합 이사장 선거가 3월 13일 목포 신안 비취호텔에서 2과전으로 치뤄졌다.

33명의 대의원 선거인단이 투표한

이날 선거에서 여근하 후보가 16표를 얻어 차점자인 유환민 후보를 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한편 투표를 마치고 곧바로 열린 취임식에서 제 12대 이사장 직무를 시작



했다.

여근하 이사장은 유병우 연합회장, 오광록 전남도 건설 방제 국장, 16개 시도 이사장 등이 참석한 취임식에서 투명한 조합 경영 등 6개 항의 조합운영 지표를 밝히고 낙선한 유환민 후보와 함께 화합 조합을 이루자고 말했다.

한편 우리 연합회 유병우 회장은 "15년간 이사장을 수행하면서 전남조합과 연합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

다"고 치하하고 새로 출범하는 여근하 이사장을 중심으로 전 조합원이 화합하는 힘있는 조합으로 발전해달라고 축사를 했다.

15년동안 전남발전을 이끌고 떠나는 김남완 이사장에게 유병우 회장은 감사패를 여근하 이사장은 공로패를 전달하고 행운과 건승을 기원했다.

또한 박준영 도지사 주승룡 국토교통위원, 전남 공단이사장, 전남 교통연수원장 등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원조합 강원도-개인택시강원조합-법인택시 강원조합

농어촌 지역 희망 택시 운행 추진 업무 협약식 체결



강원도 농어촌 지역 희망 택시 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3월 13일 오후 2시 강원도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성대히 열렸다.

최문순 강원도 지사, 김주원 강원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법인택시 이사장, 강원조합 이사·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올해안에 강원도내 18개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여 심사를 거쳐 3개 시군을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주원 이사장이

건의하여 체결된 '희망택시 업무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농어촌지역은,

○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는 감소되고, 운수업체도 운송수입 감소로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는현실에서, 농어촌지역의 교통서비스 질은 저하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 강원도는 이러한 농어촌지역 주민 교통불편 개선을 위해,

○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여건 및 인구구조, 통행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농어촌형 대중교통 서비스인 『희망택시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개 택시운수단체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한편, 『희망택시 시범사업』은 올해에는 18개 시군의 사업계획서 공모 후 심사를 거쳐 3개 시군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조합 제31차 대의원 정기총회 성료

최현태 이사장, 조합원 권익신장과 업권보호에 최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최현태)은 2014년 2월27일 오전 10:00 도내 시·군 대의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대의원 총회를 가졌다.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총회에서는 1부 기념식행사와 2부에서 총회에 상정된 2013년 결산보고, 2014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의를 가졌으며 3부에서 조합11대 선거관리위원 선출등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는 택시발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헌신의 힘을 다하여 일하겠다고 하였으며, 조합원 모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유병우 회장, 서울조합 임원진 국토부 방문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에 택시업계 의견 반영 요청

지난달 정부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동안 승차거부 3회를 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조합원들이 큰 우려를 해왔다.

기한도 정해 놓지 않고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징수, 합승, 영수증 미발급 및 신용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 3회 적발시 자격 취소한다는 내용을 법령에 넣었기 때문이다.

조합은 지난 21일 임원진 대의원 및 지부장, 부지부장 이사진 등 40여 명이 세종시 국토부를 방문해 집회를 개최했다. 조합 집행부는 “승차거부 3회에 택시자격 취소가 웬말이냐”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개최했다.

조합 집행부는 집회를 마치고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연합 회장과 함께 국토부 청사내에서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및 담당 국장과 간담

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합 간부들은 “현재 우리 개인택시조합의 노력으로 승차거부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금도 계도활동 등을 통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자꾸 처벌과 규제로 우리 조합원들 괴롭히려고만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박종흠 실장은 “입법예고기간과 상관없이 6월말까지 업계와 충분히 논의를 해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밝혔다.

유병우 회장은 “이미 실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했으니 조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맹성규 종합교통국장은 본인이 서울개인택시조합을 곧 방문해 택시발전법에 대해 논의를 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 서울조합 임원진은 유병우 회장과 함께 세종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조합과 간담회

개인택시 양수 기준, 경찰서 무사고 경력으로 환원

서울시가 개인택시 양수자 무사고 기준을 보험사 기준에서 경찰서 무사고 기준으로 환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9월, 개인택시 양수자에 대한 무사고 기준을 변경해, 경찰서에서만 확인하던 무사고 기록을 보험보상 기록상 50% 과실도 사고로 적용해 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무사고 기준의 환원을 요구해왔으나 서울시가 이를 번번이 묵살해 왔는데, 3년여 만에 개인택시 양수자 무사고 기준을 변경한다고 우리 조합에 통보한 것이다.

그동안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는 운전자들이 무사고 경력을 쌓기 위해 교통사고시 자부담으로 사고를 수습하는 등 폐단이 이어져 왔다. 특히 비사업용 차량의 사고기록은 확인도 되지 않아 전체 보험사에 사고기록을 조회하는 불편을 초래해 왔다.

우리 조합은 지난달 15일 서울개인택시조합 임원 대의원 및 지부장, 부지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6층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호 교통본부장, 택시

물류과 전체 직원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우리 조합은 이 자리에서 개인택시 양수자 조건을 거론하며 “이미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만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조합 측의 요구가 타당하므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바 있다.

개인택시 업계의 요구를 서울시가 받아들임에 따라 개인택시 양도 양수 시장의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다.

개인택시를 사고 싶어도 보험회사에 사고기록이 남아 있는 바람에 개인택시를 사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수자의 무사고 조건이 완화된 이상 서울개인택시 프리미엄 상승도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과의 간담회에서 서울개인택시 업계의 숙원사업 및 개선명령에 대한 정책변경 요구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음으로서 참석한 개인택시조합 구성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인터넷 <http://www.개인택시.org> 으로도 기사확인 가능합니다.

MG 영업용운전자공제 출시 기념 특별행사

한 달에 2만원대 금액으로 갱신없이 운전자+상해+입원 보장

(본 상품은 7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0~60세까지 동일공제로 월 **23,510원**
61~70세까지 **2만원대** 차등공제로

- ▶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한 보상을 MG영업용운전자보험으로 해결!
- ▶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비용부터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변호사선임비용과 교통상해입원비+킵스+골절비용까지 보장

※ 자세한 상담은 본점 및 지부에서 가능합니다.

! 보장내용 및 공제료 수준/(기준 : 3,000만원, 순수보장형, 20년 만기, 20년납, 월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공제료(원)
기본계약	교통상해시망공제금	3,000만원	4,800
	교통상해후유장애(3~100%이하)	3,000만원 X 지급률	
의무부가특약	벌금	2천만원 한도	1,460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한도	1,140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	12,450
선택특약	면허정지위로금	3만원	330
	면허취소위로금	300만원	480
	상해후타당수술비	500만원 한도	130
	교통상해입원비	1만원	1,370
	강력범죄위로금	300만원	90
	골절진단비(지아파절제외)	20만원	540
	골절수술비	50만원	250
	화상진단비	30만원	120
	화상수술비	100만원	10
	킵스치료비	10만원	340
합계	-	-	23,510

MG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문의전화 : 02) 423-5087~9 본점 및 각 지점

택시 발전법 하위법령에도 취지 살려야



정부가 만든 택시발전법, 지금 전국의 택시기족들은 이 법이 누구를 위한 택시법이라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택시산업을 발전시킨다며 추진해온 택시발전법이 시간이 흐를수록 앞 뒤 맞지 않는 엉뚱한 법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발전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택시대중교통법’의 땀집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실수나 오해로 승차거부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택시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택시발전보다는 택시기족들의 마음을 아프게하고 있습니다.

감차위원회 구성을 놓고 택시업계 4인 지자체 3인 참석을 이미 합의해놓고 느닷없이 하위 법령을 통해 약속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택시발전법으로 개인택시업계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조합이사장 국철희

택시발전법 앞세워 업계 고통주는 하위법령 반대한다



‘택시발전법’ 시행의 목적은 그간 무분별한 선심증차 등의 택시정책 부재로 빚어진 작금의 택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택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택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택시종사자들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지난 2월에 입법예고한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은 택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택시종사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택시문제는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당사자인 택시종사자들의 충분한 동의와 자율적인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배고파서 우는데 떡은 못 줄망정 매질을 해서야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택시업계와 정부,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택시문제 해결에 나서라.

부산조합이사장 박권수

감차 시범사업 추진과정서 관제를 해결되어야



지난해 택시발전법이 제정 공포되어 대중교통법 추진이 성사되지 않은 그동안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겠다며 우리 대전 개인택시 5,500 전 조합원들을 위로하며, 감차 등 당면과제를 잘 풀어가지고 보듬어 왔다.

택시발전법에서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감차사업에 우리 대전시가 시범후보지역으로 오는 7월 시행목표로 절차를 이행중이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경우 긍정과 우려가 교차된다. 우선 택시산업을 활성화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장서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이 있는 반면,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시범지역 감차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난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 감차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전조합이사장 김성우

지금엔 택시 발전에 진정성을 보여줄 차례



우여곡절을 겪어내고 정부입법으로 제정된 택시발전법이 우리 업계에 주었던 희망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택시 지원법 제정의 당초 취지를 살려내기는 고사하고 소위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면 택시 운전사들의 처벌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입법예고 된 처벌조항들은 이미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있는 조항들인데 처벌을 강화한 것만 다를 뿐이다.

택시 공급과잉들은 지방정부가 공급과잉으로 발생한 결과다.

해결을 해야할 정부가 책임을 업계에 돌리려는 같아 안타깝다. 장관님 우선 택시발전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울산조합이사장 김우덕

택시 발전법... 하위법령으로 하향 산업으로 추락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됐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택시운송사업을 발전시키고자 만든 법인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택시운송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택시운송사업을 더욱 더 낙후되고 하향산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못한 삶을 만드는 실정입니다.

택시운송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으로 택시 운송사업을 저해한다는 것은 전국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옥죄와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검토하셔서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조합이사장 김민환

택시업계 벼랑으로 내모는 국토부 하위법령 철회하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령인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국토교통부의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합니다.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택시업계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강화’ 일변도의 택시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심각한 언어도단일 뿐입니다.

제정 취지와 너무도 동떨어지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도 상충되는 법안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택시업계의 존립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우리택시운송사업자들은 끝까지 맞설 수밖에 없으며, 부디 25만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아우르는 법령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광주조합이사장 김문옥

처벌규정만 강화하는 국토부 하위법령 꼭 철회하라



현재 국토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과 관련하여 연합회와 마지막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입법예고한 택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은 상당부분 우리 업계가 수용하기 힘든 규정이다.

승차거부·부당요금·영수증미발급 등에 대한 처분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처분보다 훨씬 강화되어 개인택시 사업자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제정안이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행위로 적용 처분하는 것은 너무도 과중하다. 개인택시는 사업자이자 운전자로서 과태로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됨으로써 일반택시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처분이고 버스 등 다른 여객운송사업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대폭강화된 제정안의 처분규정을 여객법에 준하도록 완화 해줄 것을 건의한다.

대구조합이사장 김순락

정부 예산으로 감차한다더니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감차 할 작정인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8일 제정되어 현재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어 있으나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령제목이 무색할 정도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의 위반시 과태로 처분을 받고 이후에 동일한 위반행위시 1차 180일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라는 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격취소라는 것은 결국 사업면허취소로 이어

지게 되는 것으로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위반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가혹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까지 사업면허를 취소 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을 통해 택시면허를 취소시켜 강제적으로 감차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금껏 정부의 잘못된 택시정책으로 발생한 과잉공급에 따른 고질적인 문제를 우리 업계로 책임과 고통을 떠넘겨서는 안된다.

경기조합이사장 조창영

처벌규제를 양산하는 하위법령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추진중인 택시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이 규제개혁을 완전히 역행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 카드결제 불응 등 위반사항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 것도 모자라 경과 규정 또한 없다하니 이야말로 열악한 택시사업자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는 법이며, 규제를 양산하여 택시발전이 아닌 택시업계를 저해하고 위축시키는 법이라는 점에서 택시운송사업자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을 참을 수 없으며 재정부 제정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택시산업발전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강원조합이사장 김주원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제정안 즉각 철회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의 대중교통포함을 거부하며 대체법안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택시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택시의 과잉공급해소로 침체된 택시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약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보면 영세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대한 현실적인 지원은 없고 오히려 택시이용객이 없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감차보상을 위한 출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만 강화되어 있는 등 택시발전법이라는 명분아래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이러한 독소조항들은 개인택시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다를바 없기에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조합이사장 서돌식

공급과잉책임도 모자라 신규 면허발급을 계획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신규공급은 비록 제2차 총량산정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택시 감차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제3차 총량제 지침이 시달된 이상 이전에 수립된 공급계획은 우선 중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택시공급을 전면 중단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조합이사장 배판술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택시운전에 대한 처벌강화가 되서는 안된다.



택시운전자는 본인의 체력과 능력에 따른 영업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 수준의 수입이 힘들고, 또한 근로시간에 비해 너무나 적은 수입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2014.1.2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14.2.21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안)를 보면 택시운전자가 택시를 운전하는 평생 동안 부당요금, 합승행위, 승차거부, 카드결제 불응시 1차는 과태료 50만원, 2차는 택시운전자격정지 180일(운전할 수 없음), 3차는 사업면허 취소(개인 택시면허 취소)로 예고되어 기간에 관계없이 위반횟수에 따라 평생 처분하는 법령은 대한민국에 택시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밖에 없을 것이다. 살인죄도 공소시효(10년)가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 벌점제도 기한(3년)이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중 가장 영세한 택시업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지원이 아니다.

전북조합이사장 박상익

처벌위주의 택시발전법은 새로운 악법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의 내용 중에는 개인택시사업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조항이 있습니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영수증미발급 등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자격정지 180일, 2차 위반 자격취소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 개인택시는 사업자 처벌과 운전자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됨으로 상대적으로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됨(일반택시는 운전자 교육만으로도 사업자 처벌 면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버스 등 다른 여객운송사업과 형평성 위배 □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운전자 처벌강화만으로 위반 행위를 근절 할 수 없음 □ 따라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전남조합이사장 여근하

공급과잉, 승객감소로 고통받는 택시업계 위한 발전이 돼야



국토교통부는 국토관리, 교통과 물류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중심적 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장이신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창조경제의 깃발아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온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물류체계의 중심에 서있는 우리 택시업계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공로수송분담율의 약 46%~50%를 담당하고 3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되고, 주요 운송원기인 택시연료 및 차량가격, 각종 부대비용등이 천정부지로 연계 상승하여 공급과잉과 승객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과 생계곤란을 겪고 있어, 고사위기에 처한 우리 택시업계에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충북조합이사장 최현태

처벌강화가 택시 지원 정책이라니 악법을 재고하여주시오.



택시감차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과 새정치 민주연합 설훈의원이 입법발의한 부가세의 감차지원의 출연은 우리 개인택시사업자에게 큰 위안이 될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감차지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시행령의 운송서비스개선등을 위한 처분기준강화는 극히 미미한 종사자들의 행위를 과도하게 범죄시하는 것으로 운수종사자들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겠습니. 과태료조항도 수입에 비하여 너무과중하며 특히나 면허정지, 면허취소, 자격취소등은 한가정을 파산으로 내모는 경제적인 사형선고인것입니다. 운수종사자로서 승차거부등에대해선 국토부와 인식을 같이하지만 선량한 기사를 악의적인 신고의 굴레에 빠뜨리는 악법제정은 재고 해주시기바랍니다. 운수종사자를 위한 법이되도록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남조합이사 김해경

같은 택시발전으로 포장하고 속은 퇴출시키려는 정책은 시정돼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는 「택시운송사업의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운송사업자 근로여건의 개선을 도모하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운송사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는 순간 저는 가슴을 옥죄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겉모양만으로는 택시업계를 위한 법인것 같이 보입니다만 실상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강조한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제주조합이사 이치현

www.klpg.or.kr

깨끗한 내일을 위해 부르릉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청정 에너지
더 힘찬 자동차를 만드는 파워 에너지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그린 에너지
우리에게는 LPG가 있습니다

Clean Energy, Clean Tomorrow

 **대한LPG협회**

서천군 희망택시 성공사례 집중분석

서천군, 조례 개정 하여 합법성 확보 27개 오지마을에서 희망택시 운행

오지주민에게는 맞춤형 교통복지, 군 재정 60% 절감효과
지난해 지원금액, 5천4백66만원 택시 수입으로 스며들어

충청남도 서천군이 버스조차 가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희망택시 제도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택시업계도 비상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희망택시는 현재 서천군 관내 6개읍면 27개 마을을 운행하면서 해당 주민들에게는 택시요금으로 100원을 받고 있다. 100원으로 마을회관에서 면 소재지까지 택시를 타는 농·어촌 오지마을 주민들은 “오래 살다보니 택시타는 팔

2013년 1월~2월까지 2개월동안 3개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시범운영까지 마친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의 반응은 좋지만 희망택시 운영을 실시할 법적 근거 부족이 걸림돌로 나타났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선거법 위반 등 법적시비를 비껴나가는 우회도로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2013년 5월 31일자로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하는 절차를 마친다.



▲ 오지마을 주민을 위한 희망택시가 전국 농촌 지역에 운행하여 경영난 해소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노희견 서천군 지부장.

“ 어려운 여건에서 희망택시를 띄운 서천군청 정해민 교통행정 계장이 창의적인 행정 공로를 인정 받아 국무총리상을 받아 규제나 위법 탓만 하는 공무원 사회에 신선한 교훈이 되고 있다. ”

자가 됐다”고 크게 반색한다. 또한 승객으로 부터는 100원을 받지만 부족한 미터기 요금은 마을 이장으로 부터 받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군청 지원으로 생각지도 않은 수입원이 생겼다”고 환영한다.

오지지역 농촌인구에 대한 택시 교통편의 제공은 군청이 시행해야 하는 당연한 복지행정인데도 지자체 공무원이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희망택시 제도를 배우기 위해 서천군청을 방문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비껴나간 서천군청의 독특한 택시요금 지불 방식 때문이다.

◇ 조례 개정으로 합법성 확보

서천군은 2011년부터 2년동안 개인택시 서천군지부 등과 여러차례 교통문제 간담회를 갖고 토의하면서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택시교통 편의 제공 계획을 완성해 간다. 서천군은 2년동안 희망택시 계획을 추진하면서 세운 일정표에 따라 희망택시 운영을 위한 기초조사를 끝내고

이로써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 희망택시 운행 합법성을 확보한다.

◇ 운행 및 지원금 지급방법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서천군의 재정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인 희망택시 제도는 농어촌 버스 미운행마을 지역 주민들도 농어촌 버스 운행 마을의 주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서천군의 희망택시 추진목표다. 이런 추진목표 실현을 위해 희망택시 운영을 위한 기초조사를 면밀히 진행 법적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서천군의 설명이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 이동패턴 조사와 마을별 이동패턴표를 만들어 운행일수를 월 10회~16회 전통시장 장날과 평일로 정했다. 운행시간대와 1대로 제한한 마을별 전담택시 선정과 운행시간표 작성을 주민합의를 통한 주민이 결정하도록 주민결정 권한을 부여한것도 희망택

시 운영의 특징으로 꼽힌다. 운행횟수는 1일 왕복 2회로 하되 인원이 많은 경우는 추가운행을 허용, 승차인원이 5명으로 제한된 택시특성도 반영했다.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와 전통시장으로 정했고 특히 요금은 마을회관에서 면 소재지까지는 탑승자가 차 한 대에 100원, 마을회관에서 읍소재지까지는 탑승자 1인당 버스 기본요금을 내도록 하고 미터요금 차액은 군에서 지원한다. 지원 지급은 전담 택시기사가 1개월 동안의 운행일지를 마을 이장에게 제출하면 이장이 군청에 제출 지원금을 받아 전담택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 만족한 시행 성과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맞춤형 교통수단으로 선택한 희망택시는 마을버스 운수업체 지원예산의 4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군 재정부담은 줄이고 버스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오지 주민에게 값싼 요금을 투자하여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

는 것으로 성과가 나타났다. 서천읍 화성1리 등 6개읍면 23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개인택시 18대, 법인택시 5대를 가동한 희망택시 9개월 성적표는 9개월동안 19,464명이 이용할 정도로 화려하다. 또한 군청이 지원한 금액이 5천4백66만6천원으로 적지 않은 군예산이 서천군 관내 택시요금으로 지출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돕고 있다. 서천군 노희견 지부장은 “올 1월부터는 전담택시가 27대로 늘어 개인택시 125대중 21대가 희망택시로 운행하고 있어 농촌택시 활로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서천군의 희망택시 제도가 전국 농어촌 지역에도 반영되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 희망택시를 띄운 서천군청 정해민 교통행정 계장이 창의적인 행정 공로를 인정 받아 국무총리상을 받아 규제나 위법 탓만 하는 공무원 사회에 신선한 교훈이 되고 있다.

<글·사진 김관술>

2014년 1/4분기 주요 사업 추진실적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에 적극 대응

○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78호, 2014.1.28. 공포, 2015.1.29. 시행) 됨에 따라 택시 총량 산정 기준·절차, 감차계획 수립 기준·절차, 감차위원회 구성, 감차보상 사업의 시행, 면허취소·과태료 처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또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 기준·절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같은 날 입법예고(14. 02. 21)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주요내용

○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택시 수급실태·이용수요 특성에 관한 사항, 관련시설 개선 계획, 기본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규정

○ 사업구역별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산정 기준·절차

-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계획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안정적 가동률 및 목표 실차율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택시총량을 산정해야하며, 재산정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총량을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재산정 후 관보에 고시 할 수 있도록 함.

○ 감차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 과잉공급지역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의 경우 이를 관할관청인 도에 제출, 시·도지사는 그로부터 7일 이내 확정 후 공보에 고시.
- 소속 사업구역이 없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시·도지사는 감차계획 수립 즉시 시·도 공보에 고시.
- 업종별 감차규모, 업종별 사업자 출연금 규모, 사업구역별 감차계획 시행기간,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감차보상 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을 감차계획에 포함.
-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과잉공급이 심각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

○ 감차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중 10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감차위원회를 구성.
-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와 시·도 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
- 감차위원회의 회의 절차를 규정.

○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방안

-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은 사업구역별 감차 소요재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지자체 감차예산을 뺀 금액으로 하되, 기타 법인·개인·단체의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차 소요재원에서 뺀 후 계산.
- 시·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사업구역별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택시운송

사업자의 출연금을 관리.

○ 감차보상 사업의 시행

-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 사업 시행 의무 부과.
-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감차보상 외 양도 허용.
- 감차 시범사업 시행 기간을 6개월로 규정.

○ 복지기금의 관리·운영·감독

-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복지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관리기관을 재단법인으로 별도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운영.
- 기금관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분기별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

○ 불법행위 시 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운행정지 90일(1차), 운행정지 180일(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함.
- 3회 이상 보고나 서류제출 미실시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검사 거부·방해 시 사업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150일), 허위 보고·허위 서류 제출 시 사업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150일) 처분을 부과함.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를 부과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 규정

- 기본계획 변경 사유를 ①국내 외 사회 경제여건 변화로 택시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②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 변화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
-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유를 ①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②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

○ 재정지원 가능 사업

- 법률에서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외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보조가 필요한 사업을 ①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사업, ②택시운송사업자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③운수종사자 교육 및 연구·연수 사업, ④택시고급화 및 낡은 차량 대체 사업, ⑤경영서비스 평가제 우수사업자 및 종사자 육성 사업으로 규정.

○ 택시 운행정보 범위 및 자료의 공동 이용

-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를 운행기록 정보(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와 미터기 정보(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로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모든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사업자 단체와 공동 이용 가능.

○ 운전자격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강화(★)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80일(1차), 자격취소(2차)를 부과함.

○ 연합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연합회 건의서(14. 04. 02)를 제출 하였으며, 그 주요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건의내용

문제점	건의
□ 택시 감차위원회 구성인원 10인 이내로 명시할 경우 -사업구역별, 시·도별 자치단체의 추천인원 증가로 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 우려 -국회와 정부의 합의사항이며, 정부발표(13.12.31) 내용으로 신뢰성 문제	□ 택시 감차위원회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명시
□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영수증미발급 등 과태료 처분이 상향조정 될 경우 -횡수에 따른 처분 기한 없이 적용할 경우 과도한 처분으로 사업유지 불가능 -일반택시와 비교하여 개인택시는 사업자 및 운전자 동시 처분으로 과중한 처분	□ 위반행위의 횡수에 따른 행정 처분 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용 -과태료 처분완화(1회30만원, 2회40만원, 3회50만원)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위반사항을 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처분할 경우 -행위자 처벌 법률 원칙에 위배 -대리운전자의 지도·감독 불가능으로 사업 처분 증가 예상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위반사항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처분 규정신설 반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건의내용

문제점	건의
□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영수증미발급 등 자격처분을 상향조정 될 경우 -개인택시는 과태료 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을 동시에 받게 됨으로 일반택시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처분 -버스 등 다른 여객운송사업과 형평성 위배	□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영수증미발급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
□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처리정보 가 도입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처리정보 부당 사용 금지 규정 신설

○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업계는 업계 대표자회의, 국토부와 실무자회의, 언론홍보 등을 통하여 우리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정	추진 사항
'14. 03. 06	• 택시업계 실무자와 국토교통부 택시정책 간담회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처분기준안 - 택시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4개 단체 의견수렴
03. 07	• 개인·법인택시연합회장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간담회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처분기준 관련 논의 • 전국 개인·법인택시연합회 회장단 연석회의 개최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관련 대책 등 논의
03. 17	• 중앙일보 및 동아일보 광고게재 ▶ 택시산업을 죽이는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철회하라!!!
03. 19	• 문화일보 광고게재 ▶ 택시산업을 죽이는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철회하라!!!

03.20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시·도조함에 요청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에게 적극 건의 및 설명 • 택시업계 실무자와 국토교통부 택시정책 간담회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처분기준안 - 택시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등 설명
03.24	• 교통신문 광고게재 ▶ 택시산업을 죽이는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철회하라!!!

2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에 적극 대응

□ 국토교통부는 제3차 총량제 계획('15~'19) 수립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 총량제 시행기준을 마련하고자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14. 01. 24)하였다.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주요내용(신·구 조문 대비표)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2009. 06)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2014. 01. 24)
● 사업구역별 총량 산정방식 <신설> ▷ 실차율과 가동률에 따른 산식에 의해 총량을 산정하되 실차율은 거리 실차율을 반영	● 사업구역별 총량 산정방식 가. 산정공식 ▷ 실차율과 가동률에 따른 산식에 의해 총량을 산정하되 실차율은 거리실차율(80%)과 시간실차율(20%)을 반영
<보유대수> ▷ 조사시점에 사업구역 내에서 면허받은 전체 택시대수(개인+법인)를 기준으로 산정	나. 현재면허대수 ▷ 총량조사 시작 시점 당시에 사업구역 내에서 면허받은 전체 택시대수 (개인+법인)를 기준으로 산정
<실차율> ▷ 목표 실차율 : 수급 불균형, 택시 이용자편의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55% -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 53%	다. 거리실차율 ▷ 목표 거리실차율 · 인구 500만 이상 도시 : 63% · 인구 100~500만 도시 : 61% · 인구 50~100만 도시 : 60% · 인구 20~50만 도시 : 59% · 인구 20만 이하 도시(군 지역제외) : 56% · 군 지역 : 55% ▷ 현재 거리실차율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면허대수에 따른 가중 평균값을 거리실차율로 선정 현재 거리실차율 = $(\text{개인택시 거리실차율} \times \frac{\text{개인택시면허대수}}{\text{전체면허대수}}) + (\text{법인택시 거리실차율} \times \frac{\text{법인택시면허대수}}{\text{전체면허대수}})$ 라. 시간실차율 ▷ 목표 시간실차율 · 인구 500만 이상 도시 : 50% · 인구 100~500만 도시 : 45% · 인구 50~100만 도시 : 38% · 인구 20~50만 도시 : 34% · 인구 20만 이하 도시(군 지역 제외) : 25% · 군 지역 : 25% ▷ 현재 시간실차율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면허대수에 따른 가중 평균값을 시간실차율로 선정
● 지역별 총량제 산정을 위한 조사방법 가. 조사시기 ▷ 교통량의 계절적 변화가 적은 4~5월 또는 10~11 월을 원칙으로 하되 관광 성수기, 명절 등 특수한 경우는 그 시기를 피해서 조사	● 사업구역별 총량제 산정을 위한 조사방법 가. 조사 시행시기 ▷ 5월 총량제 계획 수립을 위해 1~4월중 시행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7항에 따라 자율감차 시범사업 시행하는 지역은 4월 총량제 계획 수립을 위해 1~3월까지 시행

<p>나. 조사기간</p> <p>▷ 실차율 : 최소 3주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되 주말 실차율이 반영되도록 함 (택시 미터기 자료 활용)</p> <p>▷ 가동률 : 일반택시의 경우 최근 1년간의, 개인택시의 경우 실차율 조사기간(3주) 중 자료의 평균치로 하되,</p> <p>- 1일 대당 8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를 1대로 산정하고 8시간 미만은 가중치를 부여하되, 3시간미만 운행은 제외</p> <p>< 신설 ></p>	<p>나. 조사자료</p> <p>▷ 실차율 : 조사시행 이전 최소 2개월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되 주말 실차율이 반영되도록 함(택시미터기 자료 활용)</p> <p>▷ 가동률 : 일반택시의 경우 최근 6개월의, 개인택시의 경우 실차율 조사기간(2개월) 중 자료의 평균치로 하되(택시 미터기 자료 활용),</p> <p>- 1일 대당 10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를 1대로 산정하고 10시간미만은 가중치를 부여하되, 3시간미만 운행은 0대로 처리</p> <p>□ 운행시간에 따른 가중적용</p> <p>4시간미만 : 0.125대, 5시간미만 : 0.250대, 6시간미만 : 0.375대, 7시간미만 : 0.500대, 8시간미만 : 0.625대, 9시간미만 : 0.750대, 10시간미만 : 0.875대</p>
<p>- 가동률은 일반개인택시 비율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하되 그 가동률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문제되는 경우 일반택시 가동률만을 적용</p>	<p>- 가동률은 일반개인택시 비율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적용</p>
<p>다. 조사방법</p> <p>▷ 조사업체수 : 실차율·가동률 조사업체는 그 지역 업체수의 30%이상으로 하되 업체수가 5개 미만인 지역은 전 업체 대상 조사</p>	<p>다. 조사표본</p> <p>▷ 조사업체수 : 실차율·가동률 조사업체는 그 지역 업체수의 30%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4개 이상 업체를 조사하고 업체수가 5개 미만인 지역은 전 업체 대상 조사</p>
<p>▷ 조사 표본(총 보유대수 기준)</p> <p>- 인구 300만 이상 도시 : 표본율 1% 이상</p> <p>- 인구 100 ~ 300만 도시 : 표본율 3% 이상</p> <p>- 인구 100만 이하 도시 : 표본율 8% 이상</p>	<p>▷ 조사 대수(총 면허대수 기준)</p> <p>- 인구 300만 이상 도시 : 표본율 2% 이상</p> <p>- 인구 100~300만 도시 : 표본율 5% 이상</p> <p>- 인구 100만 이하 도시 : 표본율 10% 이상</p>
<p>< 신설 ></p>	<p>▷ 조사표본 선정방법(조사대상 차량 및 업체)</p> <p>- 조사대상 차량은 동일차량으로 실차율과 가동률 조사</p> <p>- 사업구역별 지자체는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기관에 통보</p>
<p>라. 조사기관 선정</p> <p>< 신설 ></p>	<p>라. 조사기관 선정</p> <p>- 총량조사 시기를 감안하여 1~2월 중에 조사기관 선정</p>
<p>◎ 총량제 수립 및 시행시기 등</p> <p>가. 지역별 총량제 계획 수립</p> <p>▷ 지역별 총량제는 5년마다 사업구역별(郡 단위 지역 제외)로 면허권자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가 수립</p>	<p>◎ 총량제 수립 및 시행시기 등</p> <p>가.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 수립</p> <p>▷ 사업구역별 총량제는 5년마다 사업구역별로 면허권자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가 수립</p>
<p>※ 군단위 지역도 면허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지침을 준용하여 총량계획 수립·시행 가능</p>	<p>< 삭제 ></p>

<p>나. 지역별 총량제 재산정</p> <p>▷ 가목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별 총량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정할 수 없음. 이 경우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음</p> <p>①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 유입, 지하철 개통 등 택시의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p> <p>② 사업구역통합 등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경우</p> <p>③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시의 적정 수요와 공급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p>나. 사업구역별 총량제 재산정</p> <p>▷ 가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구역별 총량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산정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은 '19년을 초과 할 수 없음</p> <p>① 총량계획 수립 당시 대비 주민등록상 인구가 10%이상 증가되었을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의 적정 수요와 공급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p>다.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p> <p>▷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제를 수립(재산정 포함)하는 시·도지사는</p> <p>- 사전에 총량산정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받아야 함</p>	<p>다.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p> <p>▷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제를 수립(재산정 포함)하는 시·도지사는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p> <p>-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는 사업 구역별 총량산정이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만을 심의</p>
<p>라.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총량제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실차율·가동률을 다시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함</p> <p>< 신설 ></p>	<p>라.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별 총량제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실차율·가동률을 다시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함</p> <p>마. 총량제 계획의 검증 및 재산정 조치</p> <p>▷ 시·도지사는 택시 총량제 계획을 확정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택시 총량제 계획(총량 조사보고서 첨부)을 국토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함</p> <p>▷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택시 총량제 계획이 본 지침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검증함</p> <p>▷ 검증결과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재산정토록 조치함</p> <p>▷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함</p> <p>▷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재산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함</p>

○ 연합회는 제3차 총량제 계획('15~'19) 수립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14. 01. 10) 하였음.

문제점	건의
<p>□ 거리실차율 대비 시간실차율 반영 비율 상향조정</p> <p>- 택시 영업형태가 순항식에서 대기 영업형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현 실정을 반영하여 시간실차율을 상향 조정</p>	<p>□ 실차율과 가동률에 따른 산식에 의해 총량을 산정하되 실차율은 거리실차율(50%)과 시간 실차율(50%)을 반영</p>
<p>□인구가 적은 인구 20만 이하 도시 및 군 지역은 목표시간실차율이 평균 현재 시간실차율 보다 적음으로 인하여 택시 증차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음.</p>	<p>□ 목표 시간실차율 조정</p> <p>- 인구 20만 이하 도시 (군 지역제외) : 40%</p> <p>- 군 지역 : 40%</p>

<p>□ 안정적 가동률을 부제에 따라 상향조정 - 일부지자체에서는 2009년도 택시지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총량을 산정 시 현재 가동률을 90%~98%를 적용시키 지역이 상당수 존재함.</p>	<p>□ 안정적 가동률 : 부제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3~5부제 98%, 6~9부제 96%, 10부제 이상 95%</p>
<p>□ 택시총량 조사 시 소도시 지역에서 표본 조사수가 적어 증차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있음.</p>	<p>▷ 조사대수(총 면허대수 기준) - 인구 300만 이상 도시 : 표본율 3%이상 - 인구 100~300만 도시 : 표본율 10% 이상 - 인구 100만 이하 도시 : 표본율 20% 이상</p>

3 개인택시 연료부가가치세 면세 적극 추진

○ 연합회는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부가가치세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감차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원도 동해삼척 지역구인 이이재의원에게 건의하였던 바, 이이재의원 등 14인 설훈의원 등 16인이 입법발의하였으며,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p>이이재의원 대표발의 (‘14. 2. 8)</p>	<p>□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0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감면.</p>
<p>설훈의원 대표발의 (‘14. 4. 3)</p>	<p>□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감면세액 중 100분의 50을 감차재원으로 사용함.</p>

○ 정부와 택시업계는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부담금으로 보상재원을 조성하여 택시 감차(減車)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택시업계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업계는 업계 대표자회의, 국회, 기재부 등을 통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정	추진 사항
'14.01.14/16 02.03/04 02.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택시 연료 부가가치세 면세 추진(입법발의) 협조 - 새누리당 이이재의원실 방문
0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협조 요청 - 기획재정위원회 방문
0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협조 요청 - 기획재정위원회(14인)에게 건의서 제출
0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협조 요청 -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의원 등 12인에게 건의서 제출

0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새누리당, 민주당 등 대표자 면담 신청 - 당대표·정책위의장·원내대표실 방문
03.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간담회 - 연합회장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민주당의 당론의 추진하기로 결정
0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새누리당 면담신청 - 당대표·정책위의장·수석부위원장실 방문
03.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방문
04.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새누리당과 간담회 - 유일호정책위의장, 나성린 조세소위원장 등 면담

4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제완화 적극대응

○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강조한 대통령의 담화문('14. 02. 25) 발표와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동안 렌터카 업계에서 건의한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이 3월 27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가검토 과제로 포함되어 있어택시업계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택시노·사 4단체는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 허용 반대!!!” 성명서와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허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건의('14. 03. 26)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음.

○ 정부 제1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14년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관련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내용 중 “렌터카 운전자 알선(건의 : 이승철 전경련회장)” 건의과제는 추가검토 과제로 포함되었으나 택시감차정책의 가시적성과와 택시시장 안정화 등을 보아가며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14. 03. 27)하였음.

공제분담금 전자납부 번호 시행 안내

공제조합에서는 공제분담금 전자납부번호를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조합원의 공제분담금 납입이 한결 편리해 지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은 금융결제원에서 공제조합의 요청으로 부여 받은 개인별 전자납부 번호(지로용지 우측 하단에 배정된 12자리 번호)를 가지고 일반 은행기기 뿐만 아니라 일반 편의점에서 통장 및 카드만으로도 공제분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납부(www.giro.kr)는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공제분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제조합에서 현재 은행창구 업무를 통한 지로납입 수수료를 건당

210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 수수료는 90원으로 점차 조합원의 이용이 확대 된다면 조합원의 편리는 물론 공제조합의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참고

현금지급기에는 ATM, RATM, CDP, CD, APTM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CD기는 현금 출금만 가능한 반면 ATM기는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입출금기 이다. 또한 CDP기는 입금은 되지 않으나 출금과 통장정리가 가능하며 RATM기는 입금, 출금과 더불어 통장정리까지 가능한 신형 입출금기를 말하며 APTM기는 출금과 통장정리가 가능하다.



조합탐방

인천조합을 가다

소통으로 확합하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합내용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투명경영 실현할 터



“서울·부산·대구광역시는 인구감소로 시세가 위축되고 있지만 300만 인구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시세가 날로 팽창하고 있지요. 최근 1년동안에도 3만4천여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오는 2016년이면 300만 인구가 달성되고 그러면 인천시는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발전속도로 보면 택시경영이 어느 지역보다 좋은데 현실은 정반대로 거대한 조합인데 조합발전은 몇 년째 답보상태여서 조합원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제11대 이사장에 취임 3개월동안 조합쇄신에 힘써온 김민환 이사장은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잃어버린 세월이 아쉽기만 하다고 말문을 연다.

하지만 3개월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밝히면서 “인천조합은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미래를 전망한다.

◇ 투명조합 경영변신 시급

“우리 조합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조합경영을 9천여 조합원에게 가감없이 알려주는 투명경영입니다. 조합경영이 투명하지 않으면 조합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관심은 떠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조합경영이 투명하면 업무추진 성과와는 상관없이 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율도 높아집니다. 전임 이사장들이 추진했던 브랜드 택시가 허송세월을 했고 수익사업인 복지충전소는 대다수 조합원이 외면하고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적자경영을 했던 것입니다. 조합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조합원의 참여율이 높아져 주인의식이 발동하면 우리 조합은 무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단결이 인천조합의 성장판의 열쇠라고 강조하는 김이사장은 그 근거로 1인사업자인 조합원이

9천여명이 넘는 직영조합이라고 설명한다.

“조합원 한 사람이 한달에 소비하는 구매력이 50만 원만 잡아도 조합원 전체의 한달 구매력이 45억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 구매력이면 LPG, 타이어, 배터리, 자동차부품, 정비 등 조합이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넓다고 설명한다.

김이사장 취임후 변화를 추진하는 인천조합은 비공개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박탈했던 지금까지의 경영을 청산하고 투명조합으로 태어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공인회계사를 투입 조합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조합이 발행하는 회보를 통해 투명하게 공지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소통을 추진하면서 9천여 조합원간의 화합을 달구고 있다.

김 이사장은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고 공석중인 전무이사에 한만재 전 공제조합 인천지부 부지부장을 발탁했다. 한만재 전무이사는 25년동안 공제조합 인천 부지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과 친분이 두텁고 조합원들의 신망이 높아 소통과 화합을 일궈내는 책임자로 꼽힌다.

투명조합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강한 김이사장은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조합원 다수의 의견을 조합업무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자유로운 끝장토론을 도입하고 있다.

◇ 조합원을 위한 복지충전소 운영

인천조합은 임대보증금으로 30억원을 들여 2개소의 복지충전소를 경영하고 있다.

9천여명의 조합원수에 비하면 2개소의 LPG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조합원이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하게 하려면 충전소가 지역안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역안배는 고사하고 충전소 운영이 비리와 부실경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전소 이용 조합원에게는 마일리지 혜택이나 수익금이 배당되지 않고 있어 결국 조합의 불신이 되고 있다.

김민환 이사장은 조합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충전소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에 맡겨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송지호 조합원을 2개충전소 총괄소장으로 선임,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복지충전소로 되돌려 놓았다.

투명경영으로 조합원이 경영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년동안 한번도 결산공고를 하지 않은 비공개 경영 체제를 1개월마다 결산공고를 하도록 하여 투명경영으로 전환했다.

“충전소 경영을 매월 결산공고를 하는 공개경영으로 전환하면 충전소를 불신하여 떠났던 조합원은 돌아오고 외면했던 조합원도 찾아올 것입니다. 복지충전소가 정상화되어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고 나면 충전소 이용 편리성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현재 충전소를 임대하고 있는 E1 본사를 방문, 충전소 임대를 추가로 요청 지역안배를 실현할 생각입니다. 충전소는 수익사업 조건이 가장 높은 업종이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금을 전 조합원에게 돌려주어 조합원들이 충전소를 부업으로 생각하고 애정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 찾는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설명하는 김 이사장의 생각에는 어느새 복지조합 추진이 가득하다.

임대기간이 끝난 제2복지충전소 임대계약이 원만히 체결되고 나면 제2복지충전소에 1차적으로 타이어, 배터리, 부품 등 소모품을 조합원이 싼값에 구매할

수 있는 복지매장을 만들 계획도 밝혔다.

◇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전국 16개 시도조합 가운데 인천조합이 낙후된 부분은 조합사옥이다. 1987년 5월1일에 신축된 현 조합 건물은 공단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대지면적과 건축 면적 등이 비좁아 공제지부는 부평구에 조합은 서구에 따로 떨어져 있어 조합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여건 때문에 이사장 선거때마다 종합복지관 건립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미완성 상태다. 조합과 공제지부가 함께 있어야 하고 충전소·정비공장·복지매장 등 조합원에게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면 대지가 3,000평은 되어야 하고 싼값에 땅을 사려면 시유지를 골라야하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 선거공약으로만 회자될 뿐 실천의 벽은 높다.

“인천조합이 종합복지관을 건축할 재정이 없어 당장 하겠다고 나설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숙원 사업인데 손놓고 있을수도 없어 이사장에 취임후 시청, 구청과도 시유지 매입을 협의하면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밑그림을 그려놓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투명조합, 화합하는 조합으로 변화시켜 놓고 종합복지관 추진도 서두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종합복지관 건축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조합원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설명한다.

◇ 급한 현안부터 해결

인천조합에서는 잉꼬부부로 소문난 개인택시 부부 조합원인 김이사장은 ‘연수구 모범운전자 회장을 맡아 일하면서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으나 이제는 인천조합 이사장으로써 9천 조합원을 위해 봉사자로 일하겠다’고 밝힌다.

김이사장은 취임 10일만에 10명의 이사들과 함께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나 취임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시내 신세계 백화점 부근, 송내 남부역 부근 등에 손님을 태울 수 있는 택시승강장과 터미널 주변에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주도록 건의했다.

송시장은 김이사장의 건의를 받아드려 함께 현장 답사를 하고 건의를 모두수용 승강대와 간이 화장실 설치를 마쳐 민원이 해결되었다.

또한 김이사장은 9천여 조합원이 왕래하는 조합사 무실에 조합원 휴게실이 없어 취임과 동시에 창고를 쓰고 있는 2층을 수리하여 환담하며 조합을 찾는 조합원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꾸며 휴게실을 만들었다.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조합원들과 소통하려는 김이사장의 노력은 조합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글·사진 김관술>

인천조합 발전을 이끄는 임원진



한만재 전의사



강상현 이사



변창균 이사



이재호 이사



이형선 이사



유영철 이사



김세영 이사



오차식 이사



김재두 이사



심권호 이사



서권일 이사



김홍근 대의원



박종선 대의원



박한규 대의원



김성남 대의원



이주한 대의원



유영갭 대의원



신운식 대의원



이영진 대의원



주용식 대의원



최상철 대의원



성기덕 대의원



윤재영 대의원



최동일 대의원



이대영 대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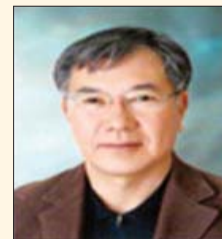
김종근 대의원



남현희 대의원



김영국 대의원



이진우 대의원



한희수 대의원



김일두 대의원



김승일 대의원



조구환 대의원



하광섭 대의원



최광현 대의원



김종민 대의원



정종섭 대의원



충북조합을 가다

농촌 복지 택시. 통학택시 추진으로 시·군지부와 함께 조합 역량 집중할 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바다와 접하지 않는 유일한 내륙도이다. 3시 9개군으로 짜여있는 충북은 인구가 175만2천9백14명(2014년 3월말 통계)이고 세대당 자동차 1대씩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카」 가정들이어서 택시 경영조건은 수월편이 아니다.

충북 도청의 통계에 따르면 도 전체의 한해동안 택시 승객은 1억7천294명으로 시내버스 승객 7천4백68명보다 많고 시외버스 승객 1천3백49만 보다는 월등히 많다. 택시의 수송운담율이 버스에 비해 높지만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맡고 있는 버스에 비교하면 경영난이 심각하다.

특히 충북은 내륙지역이어서 택시끼리도 농촌 지역 택시의 운송 수입은 도시지역 택시 운송 수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도·농간의 택시 수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농촌지역 택시 운송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최 이사장은 조합이 조합원들의 운송수입여건을 쉽게 개선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들에게 양도양수시 지급하는 지분권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조합에 대한 자산을 재평가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양극화 해소는 빙산 일각이라 걱정하면서 도농간의 운송수입 양극화 해결책으로 ‘효도하는 복지택시’와 ‘자녀사랑 통학택시’를 제시한다.

“지금 농촌은 농사인구가 노령화되어 있어 농사 짓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앞친데 덩친 격으로 FTA로 수입농산물에 밀려 국내 생산 농산물은 머지 않아 폐농까지 할 지도 모릅니다.

버스처럼 공영제를 실시할 수 없다면 복지 택시 제도를 도입 농촌지역 노인에게 시·군이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통 약자인 노인에게 택시 교통편의

를 제공 함겹게 농촌을 지키는 노인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어서 좋고 운행에 참여하는 택시업계에는 복지택시 운행으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경영난을 다소나마 경영난을 덜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는 정책입니다.” 복지 택시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버스 공영제 보다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최 이사장은 말한다.

◇ 복지 택시 추진에 조합역량 집중

충북조합은 도비지원과 시·군비 지원을 합쳐 오지 농촌 노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복지 택시와 폐교 직전에 있는 분교 어린이에게도 이용하기 편한 택시 교통을 제공하는 통학 복지택시 실시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충북도와 충북 교육청에 각각 제출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조합이 복지택시와 통학 복지 택시 지원에 도비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예산이 부족한 충북 도내 3시 9개군이 일제히 복지 택시 제도를 실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최현태 이사장은 “그동안 농촌을 지키며 말없이 수입 농산물과 맞서온 농촌인구를 보호하는 복지 택시 제도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할 복지입니다. 복지택시제도가 마련되면 우리 조합은 내부모처럼 내집자녀처럼 생각하고 친절하고 안전하게 섬기는 최선의 서비스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또한 복지택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위법시비 등을 제거해야 하는데 필요한 도와 시군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 등은 택시업계와 함께 논의 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 지부 역량 강화

4,408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충북조합에는 12개 시·군지부가 있다. 시·군지부에서는 시·군을 상대로 조합원들의 업권보호 활동을 하기도 하고 운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이끌어내는 업무를 추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시·군 지부장들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한다.

매년 열리는 조합 창립 기념일에는 충북도조합 이사 및 임원이 함께 선진 지부를 답사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지부 경영 능력을 수련하는 행사를 갖는다.

“하지만 지부간의 조합원 규모 편차가 워낙 커 양극화를 막는데는 한계를 느낀다”고 최현태 이사장은 설명한다.

충북도 조합원 4,408명— 이 중 청주시 지부 조합원이 2,438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55%를 차지한다.

나머지 45%중 충주시 지부가 698명, 제천시지부가 445명이고 9개군 조합 모두를 합쳐도 817명으로 지부간의 격차가 심하지만 충북도 조합 지부는 탄탄한 경영을 하고 있다. 12개 시·군 지부 중 청주시지부, 옥천군 지부, 진천군 지부를 제외하고는 자체소유 지부 사무실을 갖고 있다.

제천시 지부(지부장 이은상)지부는 대지 330평에 연건평 150평인 3층 사옥을 갖고 있다. 지부 사옥을 짓기 위해 부지는 자체 자금으로 매입하고 건축자금 4억5천만원은 충북도 지원 2억5천만원, 제천시 지원 2억원으로 해결했다.

2008년 1월에 입주한 새사옥에는 1층은 지부 사무실, 2층은 조합원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3층은 청풍호 콜 사무실로 쓰고 있다.

신축 건물로 지부 사무실을 옮긴 제천시지부는 제천시로부터 4억2500만원을 지원받아 콜택시에 참가하

는 425대 조합원의 콜장비를 설치해주고 2009년 청풍호 콜택시를 띄웠다. 아쉽게도 445대 전조합원이 참여치 않았으나 하루에 1200회의 콜을 받을 정도로 브랜드 택시 기반을 다지면서 콜택시 문화를 꽃피우고 있다. 지부가 경영하는 카센터까지 갖춘 제천시 지부는 445명으로는 직영 충전소를 마련 하기에는 재원 마련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꿈은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은상 지부장은 말한다.

◇ 무사고 조합원 표창하는 공제문화

공제조합 충북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무사고 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을 한 조합원들을 선발 표창하고 순금 1돈짜리 금뺨지를 가슴에 담아 주고 있다.

무사고 운전 조합원 표창 첫해인 2007년에는 309명 2008년 377명, 2009년 122명, 2010년 82명, 2011년 115명, 2012년 76명, 2013년 23명 등 4408명의 조합원 중 7년동안 1104명의 조합원이 공제 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맞았다.

최현태 이사장은 "10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한 조합원은 공제분담금 할인혜택을 누리지만 공제조합 흑자 경영에도 기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작은 상품이지만 꾸준히 전달운영하고 있다"고 밝힌다.

또한 공제지부는 현장출동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신속한 사고 현장 확보로 사고 처리과정에서 조합원의 과실이 적게 반영되어 조합원이 유리한 사고처리가 되도록 현장 처리 능력을 강화한다.

충북조합은 전 조합원을 상대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교육하면서 홍보활동도 병행 흑자 공제 지부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글·사진 김관술>

충북조합 발전을 이끄는 시·군 지부장



청주시지부장 박종택
(이사 겸임)



충주시지부장 고영수
(이사 겸임)



제천시지부장 이은상
(이사 겸임)



청원군지부장 한종석



옥천군지부장 김성근



영동군지부장 김봉용



증평군지부장 김종권



진천군지부장 김용완



괴산군지부장 김영복



음성군지부장 최병길
(이사 겸임)



단양군지부장 이한필



보은군지부장 조성래



조합이사 계재화



조합감사 이영재



조합감사 신인혜



조합이사 전일규



조합이사 이우규



조합이사 유재열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교통안전 질서백일장 개최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종석)는 4. 26(토) 오후 2시부터 부산 남구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부산시, 부산시 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한국예총부산시연합회 후원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질서 백일장」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의 건전한 교통안전 의식의 고취와 준법정신의 확산을 통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상내역은 대상은 부산광역시장상 1명,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1명과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10명, 장려 20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게 된다.

○ 참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4. 14.(월) ~ 4. 23.(수)

- 접 수 처 : 608-789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4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육홍보부 ☎ 629 - 9162

- 접수방법 : 2014년 어린이 교통안전 질서백일장 참가 신청서 제출

(Fax: 629-9179, ☎: 629-9172, E-mail: hgjung@koroad.or.kr)

춘곤증의 계절, 졸음운전 방지하는 방법은?



■ 춘곤증이 뭐예요?

봄철 많은 사람이 겪는 춘곤증은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일종의 생리적인 피로감입니다. 상대적으로 긴 겨울 동안 추위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신체가 새로운 계절을 만나 적응하면서 생긴 피로감으로, 시도 때도 없이 졸리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춘곤증은 특히 4~5월에 많이 나타나며, 피로, 졸음, 집중력 저하, 권태감, 나른함, 업무 능력 저하, 의욕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심하면 손발 저림이나 두통, 불면증, 현기증, 식욕부진, 소화 불량 등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의 위험성!

사실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은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입니다. 특히 고속도로같이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달릴 때, 1초만 졸아도 100m를 통제 없이 달리게 되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아찔한 졸음운전이 매년 상반기에 일어나는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의 원인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니, 정말 무섭지 않나요?

"천하장사도 자기 눈꺼풀은 못 든다"는 속담이 있듯이, 졸음을 이겨내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특히 봄이 오면 춘곤증 덕분에 잠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곤 하죠. 보통 상황이라면 몸을 움직여 졸음을 이겨낼 수 있을텐데, 운전 중에는 얘기가 전혀 다르죠. 엉덩이는 운전석에 딱 붙이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손을 핸들에서 뗄 수도 없구요. 때문에 운전을 하고 있을 때엔 평소보다 쉽게 졸음이 몰려오곤 합니다.

춘곤증의 계절,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창문을 열고 환기는 충분히!

졸음의 원인은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해서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공기가 쌀쌀하다고 해서 창문을 꼭꼭 닫고 운전하다 보면, 차 내에 공기가 탁해져서 더욱 졸음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창문을 자주 열고 바깥 공기로 순환시켜 주세요!

2. 2시간 간격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은 필수!

매우 당연하지만, 단거리보다 장거리를 이동할 때 졸음운전의 위험이 더 크게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라도 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죠? 장거리를 이동하실 땐 꼭 2시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휴식을 취하시면서 움직임을 크~게! 팔과 다리를 쭉~쭉! 펴면서 스트레칭도 잊지 마시고요. 스트레칭을 하면 몸 구석구석에 활기를 불어넣어 졸음을 더욱 이겨내기 쉬운 몸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차에서 잠시 내린 후 스트레칭 하기

- ① 타이어에 한 발을 올리고 두 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누른다.
- ② 상체를 앞으로 숙일수록 근육이 이완되므로 가능한 한 자세를 낮춘다.
- ③ 양쪽을 번갈아하되 운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오른쪽 다리를 집중적으로 스트레칭 한다.

▶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기

- ① 양손으로 핸들 아래쪽을 잡고 팔을 뻗어 팔과 어깨 근육을 이완시킨다.
- ② 손바닥을 맞대고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눌러 고개를 젖혀 목 앞쪽 근육을 이완시킨다.
- ③ 각지 긴 두 손으로 뒤통수를 감싸 지그시 눌러 목 뒤쪽 근육과 척추를 이완시킨다.

3. 졸음 방지에 좋은 음식

운전하는 동안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대신 입을 열심히 움직이는 것도 졸음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동승자와 운전하는 내내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이야깃거리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것도 아니거니와, 이야기를 나눌 동승자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럴 때는 먹을 것으로 대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마다 운전 시에 선호하는 음식은 제각각인데요. 그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씹는 맛이 있는 껌이나 카라멜, 또는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좋은 초콜릿, 만인의 간식 소세지 등등. 수많은 음식중에서도 졸음운전 방지에도 좋고, 춘곤증 예방에도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과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E와 불포화지방산 함유량이 많아 두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4. 아로마 향으로 졸음은 쫓고 집중력은 UP!

방향제를 활용해서 졸음운전을 예방해보세요. 특히 허브를 원료로 한 방향제는 차 안의 분위기를 바꿔줄 뿐 아니라 다양한 효능 효과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집중력 향상에 좋은 로즈마리나, 청량한 향으로 심신에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유칼립투스 향을 추천해요~!

5. 졸리면 주무세요!

무슨 얘기냐구요? 운전하다 자버리면 그냥 사고나는 거 아니냐구요? 도로 위가 아니라, 졸음 쉽거나 휴게소를 적극 활용해보시라는 거죠. 어차피 졸음 이기는 장사 없다고, 운전 중 졸음이 몰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쉽터에서 약 20분 정도의 짧은 숙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이렇게 자 두면 어느 정도 졸음 운전이 예방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20분 넘게 자는 것은 생체 리듬을 깨뜨려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데스크칼럼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정밀검사제도 개선되어야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는 운수종사자의 사상 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기록 유지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소를 업계 자체적으로 공동 운영하였으나, '09년 및 '13년에 여객 및 화물법 개정으로 동 기록관리업무가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 (2013.4.30.) 되어 공단에서 행정관청으로 매월 통보하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자격 미달자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처분결과를 동 시스템에 등록토록 되어 있다.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과거 십수년 전에 발생한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금에 와서 시행하여 운송업계의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에 대한 과중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하여 장기간 경제불황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 및 화물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하고 있다.

이제도와 관련하여 얼마나 불합리한 행정행위가 시행되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얼마전 충남 보령시지부소속 장○○

씨는 지난 2012년 8월 5일 교통사고(중상이상자 발생)로 인하여 2012년 10월 4일 보령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운전정밀검사 대상자로 명령통지를 받고 2012년 10월 11일 운전정밀검사(특별검사)를 수검받아 2012년 10월 12일 보령시에 운전정밀검사 판정표를 제출하였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되는 운전정밀검사 대상자통보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명단통보가 아닌 운전정밀검사 수검대상자를 통보하는 것으로서 관할관청에서 대상자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자는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정밀검사를 수검받아 판정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으며, 관할관청에서는 명령통지를 기간내에 운전정밀검사 대상자가 운전정밀검사를 수검받아 판정표를 제출하면 운전정밀검사를 수검한 것으로 인정을 하였다.

하지만 동일건으로 보령시지부소속 장○○씨는 2012년 8월 5일의 동일 교통사고(중상이상자 발생)로 인하여 운전정밀검사 미 수검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별표5), 제49조(별표6)에 의거 과태료, 과징금 대상자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2014년 1월 29일 보령시로부터 받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부당한 처사로 2012년 10월 4일 보령시의 운전정밀검사 통지기간내에 운전정밀검사를 수검하여 종합판정표를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건으로 운전정밀검사 미 수검자로 다시 과징금 180만원, 과태료50만원(개인택시는 사업자이면서 운전자) 처분한다는 것은 과태료처분 절차상에 위배되며, 또한 장○○씨는 2012년도에 운전정밀검사(특별검사)를 수검하였기에 2014년 1월 29일 보령시 여객자동차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발송 시점을 기준하여서는 운전정밀검사(특별검사) 미수검자도 아니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운전정밀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여줄 것을 건의 하였다.

▲정당하게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면허 취득후 재취업 하였음에도 10~20년전의 과거 교통사고에 대하여 특별검사 미수검자가 되어 교통안전공단이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제척기간을 두어 처리하여 줄것과

▲ 특별검사 대상자의 경우 교통사고 조사기관인 경찰청의 조사 완료 및

조사완료결과 전산입력 지체시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전 사전통보하여 줄것

▲과다한 행정처분에 비하여 교통안전공단의 사전통보조치 등이 전무한데,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시 과다한 행정처분에 비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수검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는 사전 개별통보조치 없이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받아야 한다는 주장만이 계속되는 것은 운전적성정밀검사와 같이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감독하는 자동차정기검사 등과 같이 일정기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여하고 대상자에게 사전에 수검안내 개별통보하는 등의 검사에 비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남으로 불합리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1대 사업자 및 영세 사업자인 택시,버스, 화물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관계 당국의 법령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홍보·지도차장 김도길

연합회 제3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유병우)는 4월15일 2시 연합회 회의실에서 제3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취임한 신임 여근하 전남조합 이사장을 연합회 이사로 선임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택시법 하위법령제정안과 관련하여 열린 토론을 하였으며, 16개 시·도조합 이사장은 하위법령 제정안은 너무나 많은 독소조항으로 가득차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당초 연합회가 건의한대로 국토부가 대폭 수용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결의하였다.



고객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생각!



개인정보 안심보험 & 택시강도 상해보험 무료가입

가입대상 : 개인택시 출고고객
 적용기간 : 2014년 3월 ~ 7월 (5개월)
 보장기간 : 출고일로 부터 1년간

개인정보 안심보험

- 전화금융 사기사고
금전적 손해액 : 100만원 限
- 피싱 및 해킹
금전적 손해액 : 100만원 限



택시강도 상해보험

- 강도상해 사망 : 1억원
- 강도상해 후유장애 : 1억원 限
- 강도 손해 위로금 : 50만원

개인택시 평생고객 프로그램 운영

2회 ~ 6회 재구매 고객

2회 : 20만원	3회 : 30만원	4회 : 40만원	5회 : 50만원	6회 : 60만원
-----------	-----------	-----------	-----------	-----------

7회 재구매 고객

- 차량구입 100만원 할인
- 평생고객 기념 손목시계
- 감사장

8회 재구매 고객

- 차량구입 250만원 할인
- 평생고객 기념 손목시계
- 감사장

9회 재구매 고객

- 평생정비 50% 할인서비스
- 평생고객 기념 손목시계
- 언론홍보 이벤트
- 감사장

* 최고의 품질과 경제성을 갖춘 YF쏘나타 택시를 지속 생산 / 공급 하겠습니다.